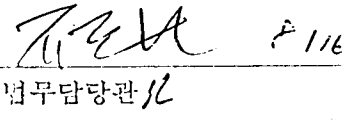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50-8651 / 전송 750-8685

문서번호 하행 11300-941	취급	시 장	
시행일자 '95. 8. 11	보존		
(경유) (제 1 안)	국 장 전 결		
수신 내부결재	과 장		
참조	계 장		
	기안	남택명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건설교통부 수정 11300-997 ('95.7.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이 '95.7.29자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별첨안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 별 첨

나. 입법예고기간 : '95. 8. 25 - '95. 9. 13까지 (20일간)

첨부 :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서울특별시

(제 2 안)

수신 : 공보1담당관

제목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제 의뢰

1.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시보게제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안 : 별 첨

첨부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하 수 국 장

224

2-1

212

(제 3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접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및 의견조회

1.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접용료 등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유관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95. 9.13 까지 하수 행정과장 참조 제출하기 바라며, 기일내 제출의견이 없으면 별도의견없는것으로 처리할것임.

가. 의견조회사항 : 별 첨

첨부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및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접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 기획담당관, 서관(1-5), 서본부(1-4), 서구(1-25 건설관리과장),
한강관리사업소장(관리부장).



225

2-2

213

공 고 (안)

심사 담당자	1995. 8. 16	제 229 호
11/1	결결	못

서울특별시공고 제1995-229 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취지

공유수면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법의 기준인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는 등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징수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산정기준 변경

- 토지가격을 현행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적용

나. 일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를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

- 유수의 점용중 공업용수 인수에 대한 점용료는 14-15년전인 1980년,
 1981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
 하여 2배로 인상

다. 점용료 과다증가에 대한 조정근거 마련

- 기준변경등으로 전년보다 10%이상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11

라. 면적 및 기간에 대한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면적 및 기간계산에 있어 반올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미만 면적 및 1월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도록 함.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도록 하여 구분별한 점용행위를 규제

마. 징수교부금 상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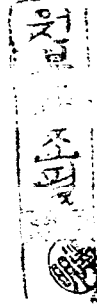
- 현행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동시에 위임한 경우 그 징수금액의 30/100을 해당구에 교부하던 것을 50/100으로 교부율을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 9.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참조: 하수행정과장, 750-86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215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것으로 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점용료등의 산정방법)①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법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용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징수교부금)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위임받은 구청장이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구청장·시장또는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금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별표1]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995. .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1. 토지의 점용	<p>1.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p> <p>○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p> <p>2. 식물의 재식(농업제외)</p> <p>○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p>3.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p> <p>○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p> <p>4.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p> <p>○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토석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구분란 제4항 제1호의 요금을 가산한다.</p> <p>5.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p> <p>○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p>6. 야적장등 목적을 위한 점용</p> <p>○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p> <p>7.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p> <p>○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p>

218

구 분	산 정 기 준
2.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 장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3. 유수의 점용	1. 인수(지하수 채취의 경우 포함) 가. 공업용수(전기사업 제외) 관경 25mm이하 월액 10,000원 " 50 " 까지 " 40,000원 " 75 " " 60,000원 " 100 " " 100,000원 " 200 " " 120,000원 " 300 " " 160,000원 " 400 " " 220,000원 " 500 " " 280,000원 " 600 " " 380,000원 " 700 " " 500,000원 " 800 " " 600,000원 ○ 관경 801mm이상은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다음 공식 에 따라 산정하여 1,000m ² 당 200원씩 적용한다. $\text{초당인수량} = \frac{\text{관경}^2 \times \text{관내유속(통상2m)}}{146^2 \times 60}$ 나. 농업용수 ○ 0.05 - 0.5m ³ /sec 까지 연간액 10,000원 ○ 0.5m ³ /sec 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21P

구 분	산 정 기 준
	<p>2. 배수(주수)</p> <p>가. 공업용수의 배수</p> <p>○ 제3항 제1호 가목의 1/3</p> <p>※ 월 10,000㎡미만은 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기타용수의 배수</p> <p>○ 제3항 제1호 가목의 1/4</p> <p>※ 월 10,000㎡미만은 정수하지 아니한다.</p>
4. 산출물의 채취	<p>1. 토석, 사력의 채취</p> <p>가.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사,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0/100</p> <p>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 한 가격 또는 농협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 재회등 2개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 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본 결정 금액이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p>
5. 전 주	○ 구분란 제1항 제1호에 준한다.
6. 기타 접용등	○ 전 각항의 기준에 한하여 산정된 금액

* 비 고

1. 인근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한 공시지가가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개별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점용및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필지일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지목이 서로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 할수 있다.

【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제4조의2관련)

산출점용료의증가율	납부할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X {10/100 + (증가율 - 10/100) X 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x {13/100 + (증가율 - 20/100) X 1/10}】
50퍼센트이상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x {16/100 + (증가율 - 50/100) X 6/100}】
100퍼센트이상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x {19/100 + (증가율 - 100/100) X 3/100}】
200퍼센트이상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x {22/100 + (증가율 - 200/100) X 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x 0.25】